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712호(그2)

2021.9.6.(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505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방역조치 고시	2
--	---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05호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및 중합소매업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과 관련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준대규모점포 및 중합소매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6일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 : ' 21. 9. 6.(월) 0시 ~ 10. 3.(일) 24시
2. 적용대상 : 서울특별시 소재 준대규모점포, 중합소매업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

■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 - 단, 적용기간(9.6.~10.3.) 중 사적 모임은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가정 및 식당·카페에서 18시 전후 최대 6명까지 가능(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/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최대 2명 포함 가능)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- 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	▲ 운영시간 제한 없음 ▲ 출입명부 관리(3~4단계, 300㎡ 이상인 경우만 권고)	▲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·이용 제한
▲ 2m(최소1m)이상 거리두기	▲ 판촉용 시음·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건본품 제공 금지 ▲ 휴게공간 이용금지 ▲ 집객행사 금지 ▲ 출입자 발열체크		

□ 준대규모점포 (면적 무관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②-1 출입자 명부작성·관리(3~4단계, 300㎡ 이상인 경우만 권고)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밀집도 완화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, 방문예약제 등 적극활용(권고) -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■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(권고) 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관찰 지자제장은 시음 · 시식 금지, 집객행사 금지, 휴게공간 폐쇄,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(또는 이용자 간 최소 1m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관찰 지자제장은 2단계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음)	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(권고) - 대기 시에도 2m(최소1m) 간격 유지, 방문예약제 적극활용
	⑥ 환기하기 ■ 실내시설의 경우,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■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,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*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통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	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⑦ 소독하기	
	■ 일 3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드) 등	
	⑧ 기타	
	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추가 수칙	①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	
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	■ 흡연실, 화장실, 탈의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
	②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	
	■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	■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
	③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	
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■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 · 신고 면적 6㎡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 안내 * 노래, 관악기연주, 댄스, 체육 강좌 등은 자제(권고)	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■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(최소1m) 간격 유지(권고)
□ 종합소매업 (시설 신고 · 허가 면적 300㎡이상 규모)		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동 수칙	① 방역수칙 준수	
	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	■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	
	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	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②-1 출입자 명부작성관리(3~4단계, 권고)	
	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	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③ 마스크 착용 ■ 관리자 ·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	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④ 손씻기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	■ 손 소독하기(권고) 또는 손 씻기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
	⑤ 환기하기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- 환기시간 게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- 창문, 출입문 등 상시 개방(권고)	
	⑥ 소독하기 ■ 일 1회 이상 소독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(쇼핑용카드) 등	
	⑦ 기타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	

□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	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	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
구분	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샤워실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▶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▶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, 수건, 드라이어기 등	▶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▶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▶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▶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▶ 대화 자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▶ 대화 자제
탕비실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▶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▶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	▶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▶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5. 위반 시 조치사항

-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-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(운영시간 제한 등)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 - 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6. 담당부서

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(02-2133-5159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